

● 제315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스토킹 처벌 실효성 강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2. 1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정진술 의원 대표 발의 】

의안번호 268

### I. 건의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정진술 의원의 35명
- 나. 제안일 : 2022. 9. 22.
- 다. 회부일 : 2022. 10. 21.

#### 2. 주문

-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스토킹 및 보복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함.

#### 3. 제안이유

- 현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합의중용과 협박을 목적으로 하는 2차 스토킹과 보복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수사기관과 법원 등이 스토킹 범죄를 ‘당사자 간 풀어야 할 개인적인 일’ 또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은 범죄’로 판단하여 피해자에 합의를 종용하거나, 낮은 처벌, 영장기각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음.
- 스토킹 범죄는 반복·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가중 처벌 조항 규정 마련도 시급함.
- 이에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가중처벌 조항 마련,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강화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건의함.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 이송처

- 가. 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 나. 정부 : 여성가족부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 1 건의안의 개요

- 본 건의안은 2021. 3. 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함)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 10. 21. 시행되었지만 지난 2022. 9. 14. 서울, 신당역에서 역무원이 스톱킹범에게 살해당하는 끔직한 사건이 일어나는 등 스톱킹처벌법에 대한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어,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가중처벌 조항 마련 등 스톱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발의되었음.

### 2 주요사항 검토

#### □ 현행법상 스톱킹 행위·범죄에 대한 보호제도

-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①(응급조치)1) 스톱킹 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 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톱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톱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톱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톱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톱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톱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가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②(긴급응급조치)<sup>2)</sup>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③(잠정조치)<sup>3)</sup>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서면 경고,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잠정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sup>4)</sup>에 그치고 있으며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최대 6개월<sup>5)</sup>에 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스토킹의 기간·대상·반복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을 두어 스토킹범죄의 재발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해 보임.

---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삭제)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④ (생략)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 반의사불벌죄 폐지 관련

-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sup>6)</sup>제3항에서는 제2항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이용한 특수스토킹범죄 외에 제1항의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스토킹범죄 전단계인 스토킹행위에서 경고 등 사법경찰관리를 통한 응급조치를 하여 행위를 중지할 수 있음<sup>7)</sup>.
-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나 처벌의사표시에 따른 보복범죄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 또는 협박하는 과정에서 2차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임.

---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7) 심영주, 이상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에 대한 검토 및 제언, 법조협회 2022.4.28., .p.80

### 3 종합 의견

- 2022. 10. 19.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온라인스토킹처벌 규정 신설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음.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주요내용8)>

구분	주요 내용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li> <li>▶ 온라인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li> <li>▶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li> </ul>
피해자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도입</li> <li>▶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도입</li> <li>▶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li> <li>▶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li> </ul>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정조치 불이행죄 법정형 상향</li> <li>▶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신설</li> </ul>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취소 등 관련 절차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경이 검사에게 잠정조치 취소·변경·연장 신청 근거 규정 신설</li> <li>▶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가 취소·변경·연장된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 규정 신설</li> </ul>

-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초기 단계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으로 시작되지만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강도가 강해지며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폭행, 협박에

8) 법무부, 보도자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 2022.10.19.



이어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특성을 지니는 바,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